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가능한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습지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표준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환경부장관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의3)
- 환경부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과 지형·지질학, 생물학, 토양학, 해양학, 환경학, 수문학 등”을 “제6조에 따른 관계공무원과 지형·지질학, 생물학, 토양학, 해양학, 환경학, 수문학 등”으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5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법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을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의 범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경작·포획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등)”을 “(경작·포획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라 함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을 “(존치해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전단 중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해양수산부장관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2제4항”을 “법 제18조의2제5항”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9. 법 제22조의3에 따라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내인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같은 법</u> -----	

			-----.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① 환경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과 지형 · 지질학, 생물학, 토양학, 해양학, 환경학, 수문학등 습지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중</u> 에서 습지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①--	-----	
			-- <u>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u> ---	
			<u>제6조에 따른 관계공무원과 지형 · 지질학, 생물학, 토양학, 해양학, 환경학, 수문학등</u> -- <u>사람 중</u>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3(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u>따른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을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의 범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u>
제7조(경작·포획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등) ①<u>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은 습지보호지역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에 연결한 시·군·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u>자로</u> 한다.</u> ②<u>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u> 제9조(출입제한·금지의 표지등) ①·② (생 략) ③<u>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제7조(경작·포획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①<u>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u> ----- ----- ----- ----- <u>사람으로</u> ----- -----. ②----- -----<u>이란</u> <u>법 제8조제5항에 따른 -----</u> ----- -----. 제9조(출입제한·금지의 표지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u>”이란 ----- -----.

1. ~ 3. (생략)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제10조의2(이용료) ① (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한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존치해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①-----
-----이란

-----.

②-----
-----이란 -----
-----.

제10조의2(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징수하려
는 경우에는 해당 -----

-----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 환경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

③ (생 략)

④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거주자

8.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8조의2제5항-----

----- 사람은 -----
-----.

1. 2. (현행과 같음)

3. ----- 사람, -----
사람과 -----

4. -----

--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6. ----- 해당 -----
----- 사람

7. 해당 -----

8.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로 경작·포획·채취가 허용 되는 <u>자</u> 9. <u>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 여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내 인</u> ⑤ (생 략)	----- -- <u>사람</u> 9. <u>법 제22조의3에 따라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내인</u> ⑤ (현행과 같음)
---	--